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08. 3. 6 (목) 10:30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권광택 의원의외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2월 22일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2월 25일

3. 제안 이유

- 새 정부출범과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신수종 사업 진출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
- 경쟁우위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을 하며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명확화(안 제2조)

1) 본사,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, 투자기업, 집단화 이전 정의

나. 투자기업이 대규모 신규투자시 지원근거 마련(안 제33조)

다.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(안 제33조)

- 1)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의 근로자들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는 2004년 11월 26일 조례 제2831호로 제정되어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·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며,
- 2006년 12월 22일 전문개정, 2007년 10월 5일 일부 개정되어 운영중에 있는 조례로 현행 운영상 제기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- 다만, 안 제33조의 제2항의 신설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근로자의 정착을 위하여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범위와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